

서울고등법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노2199 가. 강간치상(일부 예비적 죄명 : 준강간치상)
나. 강간인정 된 죄명 : 준강간
다. 강제추행(일부 ◎♣된 죄명 : 준강제추행)
라. 준강제추행

피 고 인 정◇○ (xxxxxxx-xxxxxxx), ●★★★★★교회 노회장

주거 충남 금산군 00면 00리 ____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00동 ____-__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황인정

변 호 인 1. 법□■■■■■

담당변호사 함귀용, 고영주

2. 법○♣♣♣♣♣

담당변호사 윤우정, 이연량

3. 법▷♠♠♠♠♠

담당변호사 김명진, 윤도연

4. 법♠☆☆☆☆

담당변호사 조준웅, 노영록

5. 변호사 김재진

위 '♣♣♣♣'은 주로 ♣♣교 원리를 요약·인용한 것으로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예수님이 현실의 이 땅 위에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재림하며, 그 재림예수가 피고인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암시함으로써 위 교단의 신도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의 면전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 예수라고 칭하였다.

또한, ●★★★★★교회 간부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그의 생가인 충남 금산군 OO동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메시아인 정◇○ 선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된 행위이고 하늘의 생명책에도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은혜'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선생님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라고 사전에 주입시키는 ■◇, 피고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가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 당한 듯이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인에게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 1. 6. ♣♣♣♣♣♣연합에서 탈퇴한 황■■■■이 ♣♣♣♣♣♣연합의 다른 신도들에 의하여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 ♣♣♣ 등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性)파문'이라는 제하에 피고인의 성(性)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신도들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추종자들과 함께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음해하고 있으니 절대로 믿지 말라.", "방송을 보면 무기한 금식에 처한다.", "피고인의 비리를 폭로한 인터넷 사이트(000.00000000.00.kr)에 들어가 글을 읽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라고 겁을 주면서 신도들의 절대적 복종을 강화해 갔다.

▣◇,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에 따른 ♠□□□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01. 3. 16. 외국으로 도피◇★★, 피고인의 외국 은신처에서도 피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이 항상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면서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하여 국내 ○★★★교회 신도들에게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어린 여신도들에게 피고인은 재림예수로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킨 후 외국의 은신처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②피해자 김♥◇(여, 23세)는 대학생이던 2000. 6.경 친구의 소개로 ○★★★★교회 교단에 들어가 2001. 7. 4.경 ♣♣♣♣ 과정을 수료하고 세례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변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③피고인은 2001. 8. 22.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리조트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1주일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교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1. 8. 30. 19:00경 자신과 추종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리조트 내 숙소

로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있던 여자 신도인 ♣☆☆, 문㉑㉑ 등과 함께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위 리조트 방 안에서 먼저 면담을 하던 다른 여자 신도에게 신체검사 결과 암에 걸렸다고 고지하여 그 여자 신도가 오열하면서 방을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가지고 ♥♥ 아무런 의학적 장비 없이 암도 진단할 수 ◇♥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를 위 ♣☆☆ 등 다른 여자 신도 3명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동시에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에도 복종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를 보이면서 ♣☆☆, 문㉑㉑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신체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욕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고 겁을 준 후 옷을 벗게 하고, 샤워기 헤드가 제거된 호스를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다량의 물을 주입시키고, 피해자의 몸과 자궁에 암과 물혹 등이 있는지 검사해주겠다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브래지어를 벗기고 젓가슴을 주무르고, 침을 바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흔들었다.

④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으로 어떠한 ♠▲를 보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면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은 의학박사 자격증도 ◇
♡, 하나님을 통하여 검사를 해주니 너희에게도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검사가
시작되었으며, 질 세척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과정에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협박을 가하였음을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의한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에서의 진술이나 ★◇◇
◇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였음을 ◎♣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앞서 ♣☆☆, 문罽罽 등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 차罽가 되어 피고인에 의한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저항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다는 ♣▲▲▲,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강제추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위 부분 공소사실

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①과 같다.

②;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②와 같다.

③;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③과 같다.

④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출국하여 낯선 이국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맹신하는 추종자들에 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200명 이상의 신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2001. 8. 30. 귀국을 앞두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해 피고인이 머무르는 숙소에 가게 된 사실, 위 면담 당시 약 20명의 신도가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 문■■■, ▷□□와 한팀이 되어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라식수술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피고인은 질 세척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차■■로 면담실에 딸린 욕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샤워기 헤드 가 제거된 호스를 피해자 일행의 음부에 넣어 다량의 물을 주입하였는데, 피해자는 세 번째로 욕실에 들어갔고, 당시 욕실의 문이 열려 ♥♥ 앞서 들어간 일행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었던 사실, 욕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은 몸과 자궁에 압과 물혹 등이 있는지 검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차■■로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레이시아로 가기 ◆◆에 이미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피고인이 의학박사라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피고인의 몸을 통해 기뻐하신다"라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성(性) 상납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실을 각 ◎♣할 수 있다.

위 ◎♣사실에서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진료 유사행위로 오신한 나머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주변

상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회 신도로서 피고인을 재림예수로 믿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의심을 할 경우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외국으로 온 상황이고, 범행 장소나 여러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00. 6.경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교회에 친구인 강▶▲을 통해 가입한 이후 치어리더로 활동하면서 ●★★★★★교회의 주요 교리인 ♣♣♣♣을 배우고 신도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교회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전도사인 ◇◆◆으로부터 어학연수를 나가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고 가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치어리더 단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신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 후 피해자는 치어리더 단장으로부터, 영적으로 힘들고 급한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른다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출국 직전에 ◇◆◆에게만 피고인을 만나러 출국한다는 말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어학연수 비용조로 받은 100만 원을 여비로 하여 2001. 8. 21.경 ●★★★★★교회의 세계문화교류행사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200명 이상의 신도들과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1. 8. 30. 귀국을 앞두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해 목사나 다른 신도들이 인솔에 따라 피고인이 머무르는 리조트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여신도들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다가, 생리가 끝났다고 하자 매우 기뻐하였다.

○피고인이 기거하던 리조트의 __층은 복층 구조로 아래층에는 거실과 방, 주방 등이 ■◎◎어 ◆♥,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면 욕실이 딸린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를 데려간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의학박사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 때문에 심하게 떨리는 심정이었다.

○위 리조트 아래층에는 약 20명의 신도가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2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 문■■■, ▷□□와 한 팀이 되어 오후 5시경 위층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 일행이 면담을 위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신도가 자신에게 암이 발견되었다면서 울면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은 트렁크팬티에 러닝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 일행은 대부분 어깨가 끈으로 된 원피스 차림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라식수술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는데, ●★★★★★교회 가입 전에 있었던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자신의 타락과 ♣♣♣♣ 공부를 소홀히 한 죄책감에 감정이 폭발쳐 울기도 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자신은 의학박사 자격증도 ◆♥ 하나님을 통하여 검사를 해주니 너희에게도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면서 방에 달려 있는 욕실로 한 사람씩 불러들였는데, 밖에서 보니 피고인이 처음 들어간 ♣☆☆의 음부를 샤워기 헤드가 제거된 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씻기고 음모를 뽑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와 ▷□□가 이 광경에 놀라 문■■■■를 쳐다보니 문■■■■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차■■가 되어 욕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마저 벗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가 제거된 호스와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물을 넣은 다음 음모 때문에 자궁암에 걸린다면 음모를 뽑았다.

○그 후 욕실을 나온 피고인이 ♣☆☆를 침대에 눕히고 브래지어를 풀고 그녀의 오른쪽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가운데 손가락에 침을 문혀 질 속에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는 피해자는 너무 놀라 제일 마지막 자리로 갔다.

○이어 피고인은 문■■■■, ▷□□, 피해자 순으로 가슴을 만지고, 가운데 손가락에 침을 문혀 수회 질 속에 넣고 그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였다.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끝낸 후 피고인은 일행을 일렬로 세운 후 안아주면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졌고, 피해자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을 나왔다.

○그러자 밖에 기다리던 신도가 "선생님이 신체검사를 해 주었느냐, 선생님 너무 감사하지, 좋으시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

○바로 옷을 바꾸어 입은 피해자 일행은 로비로 가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에 걸쳐 공항으로 이동하였는데,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신도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말하자, 그들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신체검사 해주셨구나,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 피해자는 주거지인 부산에 돌아와 ◇◆◆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

○이 일이 있는 후 피해자는 한때 피해자를 관리하던 지위에 있다가 ●★★★★★교회를 탈퇴한 박■■■을 만나 피고인과 여신도 사이의 성관계 등에 ★○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교회를 탈퇴하고 10여 일이 지나 2001. 9.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이며, 검찰 및 ★◆◆◆에 이★♣♣♣ 진술이 전▷♠으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 진술하기 ■◆◆ 내용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나 심지어 ●★★★★★교회에 가입한 후 금기 사항인 성관계 사실 등을 그대로 말하였으며(공판기록 1249~1252쪽), 그와 같은 내용은 ◇◆◆의 ★◆◆◆에서의 진술(공판기록 1337쪽)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3세로 미혼이었고, ★◆◆◆에서 증언할 당시는 갓 결혼한 여성○□□ 자신에게는 치부가 될 수 있는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

하거나 갑자기 ㉠★★★★★교회를 탈퇴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 ♣☆☆의 ★◇◇◇에서의 진술과 ▷□□의 ♠♠♠♠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인데, ♣☆☆나 ▷□□는 ㉠★★★★★교회의 신도들로서 위 선교회의 총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 입장에 있다고 보이고,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또한, ◇◆◆, ▷☆☆의 ★◇◇◇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는 진술이고, ◇◆◆의 경우, 자신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들었고 당시 다른 교인을 통해 말도 되지 않는다는 0리를 ★▲▲▲ 진술하나(공판기록 1354쪽), 이는 ◇◆◆이 피해자와의 친밀하였던 관계에 비추어 이해하기 ㉥◆◆ 진술이고, ▷☆☆의 경우, 피해자와 박㉦㉦㉦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듣게 되었는데 그때 박㉦㉦㉦이 피해자에게 고소하면 유학비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말을 ★■ ■■ 진술하나(공판기록 1360~1362쪽), 당시 피해자나 박㉦㉦㉦은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에게 선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탈퇴를 권유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는 ♣▲▲▲, 돈을 노리고 뭔가를 하는 듯한 말을 ▷☆☆의 면전에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 ◇◆◆이나 ▷☆☆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3) 준강제추행죄의 성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등).

위와 같이 신빙성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메시아로 믿은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행선지를 숨긴 채 말레이시아로 갔고, 자신이 머물던 숙소에서 ●★★★★★교회 목사나 신도의 인술에 따라 피고인이 머무는 리조트로 갔으며, ○추행 당시 피해자의 일행은 물론 면담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도들이었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질 속에 샤워기 호스를 넣을 때에도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고 질 내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 제일 마지막으로 자리를 옮긴 정도의 행동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 긴장하고 있었고(공판기록 1226쪽), 자신의 과거 이성관계나 ♣♣♣♣ 공부를 게을리 한 죄를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받치는 감정 상태에서(공판기록 1229쪽), 피고인이 욕실에서 ♣☆☆에게 하는 행위를 보고 무척 놀랐으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였으며,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의 부족으로 자신이 시험에 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반항할 엄두도 못 냈고, 심한 공포감을 느꼈으며, 그런 심정 자체가 외부로 드러날까 봐 또한 무서워 ◇★★(공판기록 1230~1233쪽), ○일행인 문■■■■ 등이 그와 같은 일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밖에 대기하던 신도들이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는 "건강검진을 해 주었느냐, 너무 감사하

지, 감동해서 운 거지"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무섭고 끔찍한 생각이 든 상태였다(증거기록 178쪽).

▣◇으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성경해석론 등을 통하여 ①★
★★★★교회의 총재로서 주도적·지도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②★★★★
교회는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종교단체로서, ③④ 신의 섭리와 뜻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
었던 사실이 ⑤♣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위 추행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 그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피해자
의 심리상태,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
으로부터 자신이 의학박사라는 말을 듣고, 한 여성이 피고인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었다면서 울고 간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
위를 진료 유사행위로 오신한 나머지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
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 피고인의 행
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性的)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되고, 이에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II. 피해자 김▶◇, 김◆▲ 부분

1. 강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위 부분 공소사실

①; 앞서 본 피해자 김♥◆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 ①과 같다.

②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김◆▲(여, 20세, 동생)과 피해자 김▶◇(여, 20세, 언니)은 각각 1998년경과 2001년경 ●★★★★★교회 교단에 들어가 ♣♣♣♣ 교육을 수료★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교회 신도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등의 신변에 큰 위해가 가해진다는 교육을 받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③피고인은 2003. 2. 11.경 ♣◎◎◎에게 전화하여 비밀리에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홍콩으로 오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 행선지를 알리지 말라고 철저히 교육하였다. 이에 ♣◎◎◎은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속이고 2003. 2. 15.경 낮선 홍콩으로 가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교회 신도에 이끌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16. 10:30경 피고인과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홍콩 ♣♣♣♣ 아파트 __층 A호실로 이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 의하여 세뇌된 ♣◎◎◎을 불러 그날 23:00경까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피

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를 보여 ♣○○○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방안으로 ♣○○○을 데려가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좌우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한 후 ♣○○○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김▶◇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 김▶◇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츠리며 거부하자 피해자 김▶◇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김▶◇의 온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을 강간하는 장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김◆▲이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자 김◆▲을 욕실로 데려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회 쭈시다가 방으로 데리고 온 후 건강검진을 해주겠다고 ♣○○○을 침대에 나란히 눕힌 다음 ♣○○○의 음부에 피고인의 양 손가락을 동시에 집어넣어 휘젓고, 이에 피해자 김◆▲이 아프다고 울면서 저항하자 피해자 김◆▲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김◆▲의 온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리면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④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 김◆▲을 각각 1회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야 한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협박의 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2003. 2. 16. 10:30경 피고인과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홍콩 ♣♣♣♣ 아파트 2층 A호실로 이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 의하여 세뇌된 ♣○○○을 불러 그날 23:00경까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를 보여 ♣○○○을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본 것 자체가 협박의 내용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으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에게 해악을 가할 ♠▲를 보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폭행의 태양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김▶◇의 온몸을 누르고, 그녀의 다리를 강제로 벌렸다."는 것과, "피고인이 김◆▲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김◆▲의 온몸을 누르고,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렸다."는 것인데, ♣○○○도 ♠□□□ 이래 ★◇◇◇에 이★♣♣♣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보일 뿐, 그에 더 나아가 그것이 ♣○○○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는 보이지 아니며, ♣○○○이 반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력을 사용★■ ■ ◎♣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한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당시의 상황, ♠◎◎◎의 나이 및 정신상태, 피고인과 ♠◎◎◎과의 관계,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육△♠ 영향, ♠◎◎◎이 손쉽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고, 이에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강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위 부분 공소사실

- 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①과 같다.
- ②;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②와 같다.

③;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③과 같다.

④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김▶◇, 김◆▲을 간음할 당시 ♣◎◎◎은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낯선 홍콩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맹신하는 추종자들에 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또한 쌍둥이 자매인 ♣◎◎◎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싫은 기색이라도 보이면 피고인이 낯선 이국에서 자신들을 강제로 떼어 놓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욱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

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을 각각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된다.

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 김◆▲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교회를 반대하는 단체인 '♣♣♣♣' ■♡♡과 공모하여 허위로 피★♡♡을 진

술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않아 전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 김▶◇, 김◆▲의 진술내용

○○○○○의 ★◆◆◆ 및 피해자 김◆▲의 ♣♣♣♣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은 쌍둥이 자매로서 동생인 피해자 김◆▲은 1998. 7.경, 언니인 피해자 김▶◇은 2000. 10.경 각 ○★★★★★교회 교단에 들어가 ♣♣♣♣ 교육을 수료한 후, 피해자 김◆▲은 ♣♣♣♣ 강사로 활동하고 피해자 김▶◇은 치어리더 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을 메시아라고 믿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은 응원단 간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사진을 찍고, 신장, 몸무게, 전화번호, 하고 싶은 말 등을 적어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2002. 7. 21.경 피해자 김▶◇에게 전화◆★★, 2002. 8. 3. 피해자 김◆▲에게 전화한 이후 ○○○○○에게 수차 冊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오던 중 2003. 2. 11.경 피해자에게 홍콩으로 오라고 전화◆★★, ○○○○○은 2003. 2. 15. ○★★★★★교회 신도들이 마련해 준 항공편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홍콩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이 ○○○○○에게 홍콩으로 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여 ○○○○○은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프랑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은 2003. 2. 15. 홍콩에 도착하여 ●★★★★★교회 목사인 ○○○의 안내로 홍콩 소재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03. 2. 16. 1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홍콩 ♣♣♣♣ 아파트 _층 A호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 및 그곳에 있는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시각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신도들과 개별면담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도들인 ♠▲, ♣○○은 피고인의 양옆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고, ♣○○○은 바닥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마를 받은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과 ♣○○은 ♣○○○에게 "피고인이 피곤하니 팔, 다리를 주물러 주면 면담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로부터 잠시 안마를 받은 후 ♣○○○에게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양옆에 팔베개를 베고 누우라고 하였다. ♣○○○은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서 거리낌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위와 같은 자세로 한참을 누워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 김◆▲이 옆으로 움직이자 손을 빼 후, 피해자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김▶◇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때 피해자 김▶◇은 울면서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성기를 빼면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을 빼앗아가려고 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 김▶◇을 간음하는 것으로

보고 올다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눈의 렌즈가 빠졌다고 말◇★★, 이에 피고인은 ♣○○○과 렌즈를 찾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질에 염증이 있는지 봐주겠다"고 하면서 ♣○○○을 침대에 눕힌 다음 ♣○○○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 김◆▲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그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안 아플 거야, OO면 O리 질러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김◆▲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이며, 검찰 및 원심, 당심에 이★♣♣♣ 진술이 전▷♠으로 일관된다.

또한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 진술하기 ▣◆◆ 내용이며, 피해자 자신의 성관계 사실(공판기록 1581쪽), 이 사건 후에 있는 엑소더스 ■♥♥과의 접촉 사실 및 고소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도 그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은 20세의 미혼여성이었고,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충실히 다니다가 갑자기 탈퇴하면서 메시아로 믿던 피고인을 무고하면서 까지 자신들에게는 치부가 될 수 있는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의 가정형편이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 당시 사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2. 7. 21.경 이후 ♣○○○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을 홍콩으로 오게

한 사실, ①★★★★★교회 예술단 소속 치어리더들의 사진 및 신장, 몸무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프로필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본 사실(증거기록 383쪽),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 등과 피해자 등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에게 자신의 양옆에서 팔베개를 베고 눕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386, 387쪽)을 ○♣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 ♣○○○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공안에 체포·수감되어 협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 국내로 송환되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에서 당한 고문으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으로 송환된다는 두려움에 싸여 종전에 ♥○에서 진술한 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검찰진술 당시 사선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술◆★★, 피고인이 위 검찰 제2회 피♣◆◆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조서 말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장♥♥, 김■♠에 관하여 ◆◆ 진술한 부분을 수기로 정정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진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 ♣☆☆, ♠▲의 ★◆◆에서의 진술이나 ♣○○의 ♠♠♠에서의 ♣○○의 진술이 ♣○○○의 진술과 ■○○인데, 위 ○○○ 등은 모두 ①★★★★★교회 신도이면서 총재인 피고인의 측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 입장에 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한 내용에 관해서 까지 이를 부인하거나 극도로 조심스러운 ♠▲로 진술에 임하고 ♥♥, 그들의 진술보다는 ♣○○○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변♣♣♣은, ♣○○○○의 진술이 ♣○○○○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거나 ♣○○○○ 각자의 종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 피해자 김♠▲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과 연락을 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하고 ♠□□□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 ■♡♡의 도움을 받았고, ♣○○○○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바닷가에 산책하러 나가 찍은 동영상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의 진술은 전▷♠으로 일관되어 ♠♡, 피해자 김♠▲이 ♣■과 연락을 계속 유지한 것은 자신을 ♣★★★★교회에 인도하였던 ♣■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 진술하고, 이는 ♣■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며(공판기록 1636~1639쪽), ♣○○○○이 사전에 ♣♣♣♣ ■♡♡과 공모★■■■■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사후에 ♣○○○○이 ♣★★★★교회 측의 대응에 맞서 ♣♣♣♣ ■♡♡의 도움을 ♣○○○ 하여 그것만으로 ♣○○○○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변♣♣♣ 주장의 위 동영상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촬영에 대응하여 ♣○○○○이 가끔 웃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전▷♠으로 특히 피해자 김♠▲의 경우 상당히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에 ★○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3) 준강간죄의 성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

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이 ○♣되는 ♣○○○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홍콩에 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순간에조차 피해자 김▶◇은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김◇▲은 "아파요" 정도의 말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이 같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피고인을 신봉하는 신도만이 있었을 뿐이다.

■◇으로, 피고인은 그의 성경해석론 등을 통하여 ●★★★★★교회의 총재로서 주도적·지도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회는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종교단체로서, ◇●● 신의 섭리와 뜻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위 간음 당시의 피고인 및 ♣○○○의 행위 내용과 ♠▲, 그 당시 ♣○○○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의 심리상태,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혼

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性的)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준강간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되고, 이에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이 2003. 2. 17. 위 홍콩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이 잠이 들어 있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3. 2. 18.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의 사주를 받아 허위로 피★♡♡을 진술하고 ◇♡, ♣◎◎◎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되고, 이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김◆▲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행위는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되고, 이에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피해자 김■♠ 부분

1. 강간치상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위 부분 공소사실

①; 앞서 본 피해자 김♥◆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 ①과 같다.

②피해자 김■♠은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8. 5.경 ●★★★★★교회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9. 27.에 ♣♣♣♣ 교육을 수료한 후 약 7년간 전도와 강의 등 ●★★★★★교회 종교활동에만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③피해자는 ●★★★★★교회 교단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른 여자 신도 4명, 남자 신도 9명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위 교단 신

도들이 거주하는 ♡◎ 안산시로 갔다. 피해자를 비롯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6. 3. 31. 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은 2006. 4. 2.경 피고인이 거주 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김■♠을 피고인의 숙소 목욕탕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틀어진 샤워기 호스를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확장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처녀막파열상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④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증거는 없으므로, 강간의 점만을 유죄를 ◎♣하고,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 ■♥♥과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로 피★♥♥을 진술하고 있는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않아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이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8. 5.경 ㉮★★★★★교회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9. 27.에 ♣♣♣♣ 교육을 수료한 후 약 7년간 전도와 강위태권도부 활동 등 ㉮★★★★★교회의 종교활동에만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어 왔다.

○피해자는 ㉮★★★★★교회의 선교활동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른 신도들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위 교단 신도들이 거주하는 ♥◎ 안산시로 가서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 일행과 함께 2006. 4. 2.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2006. 4. 2.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에서 예배, 예술제, 면담 등의 행사

를 마친 후 ♡▷▷, 장♥♥ 등 태권도부 5명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가 다음날인 2006. 4. 3. 03:00경 피해자를 깨워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려간 후 ♡▷▷ 자신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06. 4. 3. 04:00경 여러 개의 문을 지나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팬티 벗어,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다시 "야, 팬티 벗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 호스를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 자신의 성기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확장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2006. 4. 3. 아침 장♥♥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후 장♥♥과 함께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다른 신도들이 등산을 간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여권이 있는 건물로 간 후 짐을 챙겨 ♡◎ ㅍㅍㅍㅍ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는 위 공항에서 다음날 09:00경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산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강간 당했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며 만일 위 항공권의 일정대로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꼭 와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ㅍㅍㅍㅍ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조선족 동포들이 구해준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06. 4. 4. 위 ㅍㅍㅍㅍ공항으로 갔는데, 김ㅍㅍㅍ 등 ●★★★★★교회 신도

들이 나타나 피해자와 장♥♥을 잡으려고 ◇★★, 이에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O리치자 ♥◎ 공안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와 위 신도들을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피해자와 장♥♥은 2006. 4. 6.까지 ♥◎ 공안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06. 4. 7. 09:00경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이며, 검찰 및 원심, 당심에 이★♣♣♣ 진술이 전▷♠으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 진술하기 ▣◆◆ 내용이며, 자칫 자신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음에도 이 사건 후 ♣♣♣♣ ▣♥♥과의 접촉 사실 및 고소 과정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도 그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경험이 없는 26세의 미혼여성○□□, 7년 동안이나 ●★★★★★교회에 충실히 다니다가 갑자기 탈퇴하면서 메시아로 믿던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자신에게는 치부가 될 수 있는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 당시 사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2006. 4. 30. 04:00경 하나님관이 있는 _층 응접실로 피해자를 기도하기 위해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사람 없는 곳에서 가정에 ★○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달리 장소가 없어서 목욕탕이 딸린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02쪽). 헤드를 떼어낸 샤워기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

하고, 여자는 밀이 깨끗해야 하니 잘 닦으라고 하면서 등에 비누까지 칠해주었다(증거 기록 398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고 ♥♥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공안에 체포·수감되어 협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 국내로 송환되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에서 당한 고문으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으로 송환된다는 두려움에 싸여 종전에 ♥◎에서 진술한 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검찰진술 당시 사선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술◆★★, 피고인이 위 검찰 제2회 피☐☐☐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조서 말미에, "제가 진술한 내용 중에 목욕탕 찜질방에서 장♥♥ 등을 안아 주었을 때 제가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전라 상태에서 (안아주었다고) ◆◆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 김♣♠)은 찜질방 안에 없었습니다."라고 수기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을 직접 정정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및 장♥♥ 등 5인이 피고인의 숙소 내 기도실에서 피고인 앞에서 전라로 춤을 추다가 그 중 장☐☐, 이☐☐, 장♥♥이 피고인을 따라 지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피해자의 진술(공판기록 1778, 1779쪽)이나 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88쪽)과도 일치하는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진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장♥♥은 ★◆◆에서 당시 피해자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도 장♥♥ 자신에게 ◆♠♠ 사실을 털어♥♠♠ 진술하였다.

●♣♣, 장♥♥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을 매우 구▷♠으로 진술◇★★, ◇●
 ●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도 일부 ♣♠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장♥♥이 피
 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 ◆◆의 진술을 번복하여 ★◇◇◇에서 위와 같이 진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의 ★◇◇◇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
 고, 게다가 장♥♥은 자신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이 누구에 의하
 여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은 워드프
 로세서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고소취소장을 수기로 직접 작성★
 ■■■ 진술하고 ♥♥, 장♥♥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명 ■■■), ■■■ ▷▲▲, ♥▷▷의 ♠♠♠♠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
 술과 ■◎◎는데, 그들은 모두 ●★★★★★교회의 신도이거나 총재인 피고인의 측근
 ○□□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 입장에 있다고 보이고, ●■■■
 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담한 곳은 지하실이 아닌 _층 소◇♣♣♣ 진술하여, 피
 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피해자를 목욕탕이 딸린 방으로 데려가 물을 뿌려 주었다
 고 ◎♣한 것과 ■◎◎는 진술을 하거나, 극도로 조심스러운 ♠▲로 진술에 임하고 ♥
 ♥, 위 ●■■■ 등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
 ■♥♥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하나, ◇●● 사정만으로 피★♥♥ 자체에 관
 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벗어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피해자의 웃는
 모습이 보이는 하나, 이는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곳을 벗
 어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 공안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공안이 '그럼 손가락만 들어간 거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불완전한 통역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에 ★○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된다.

(3) 폭행·협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상태에서 ♡◎에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목욕탕 안에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로 믿고 있던 피고인이 "야, 팬티 벗어"라고 소리쳐

옷을 벗게 하고,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 호스를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소리치는 상황에 있었던 ♣♣♣,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당시의 구>♠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이고 피고인이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치상 여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의사 고경봉 작성의 소견서만으로는 이를 ◎♣하기가 부족하고, 특히 피해자가 피해 일시인 2006. 4. 3. 06:00경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6. 4. 8. 14:00경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에 의하면, 그 진료 당시 질내 파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 회신서 및 그에 첨부된 의사 진료지시서(PHYSICIAN'S ORDERS)의 기재(공판기록 3507쪽, 3533쪽) 및 ♥□□의 ♠♠♠♠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6. 4. 10. 산부인과 전문의인 위 ♥□□의 진단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에 7시 방향으로 0.5cm 크기의 피멍을 동반한 열상이 관찰되어, ♥□□가 이를 의사 진료지시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멍을 동반하였다는 것은 1~2주 전에 생긴 상처로 볼 수 ♠♥, 호스나 손가락을 집어넣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상처인데,

고리 모양의 처녀막은 위와 같은 열상으로 인해 장력이 완전히 없어져 별다른 저항 없이 성기나 손가락의 삽입이 가능해지는 사실이 ♣♣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 병원 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 처녀막이 상했다는 말을 ★▲▲▲ 진술하고 ▲▶▶,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은 것으로 ♣♣된다.

2. 소결

그렇다면, 강간치상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범위 내에서 유죄로 ♣♣되고, 이에 ★○ 검사의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IV. 피해자 장♡♡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간치상의 주위적 공소사실

① 피해자 장♡♡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2. 11.경 ○★★★★★교회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12. 28.경 ♣♣♣♣ 교육을 수료한 후 ○★★★★★교회 교단을 홍보하는 응원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등의 신변에 큰 위해가 가해진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고,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② 피해자는 ○★★★★★교회 교단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른 여자□△ 4명, 남자 신도 9명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그 추종자들이 거주하는 ♡♣ 안산시로 가서 피해자를 비롯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였다.

그 후 여자 시범단은 2006. 4. 2.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숙소에는 여러 마리의 개를 거느린 경호원들이 상시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게 어떠한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4. 2.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숙소 지하 목욕탕으로 태권도 시범단인 장○○○, 이○○○와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분위기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등에게 모두 옷을 벗도록 지시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등이 옷을 벗자 위 3명의 음부에 손가락을 차○○로 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성기를 이○○○와 장○○○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차○○로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3명의 질 세척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머리를 뺀 샤워기에 물을 틀어 자신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쭈셔넣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상, 불안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③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범하였다.

나. 준강간치상의 예비적 공소사실

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①과 같다.

②;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②와 같다.

③위와 같은 간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림예수로 믿고 피고인의 행동의 거

부하거나 의심할 경우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으로 온 상황으로 가족들도 피해자의 구▷♠인 행선지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장소는 인가가 드문 속에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형 건물로서, 예배당은 물론 사우나와 수영장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여러 마리의 개를 거느린 경호원들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자로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떤 이해를 가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④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사진이 ▲▶▶,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강간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이 생겼고, 납치를 모면한 직후 ♡◎ 공안을 대동하고 ♡◎ ㅼㅼㅼ 소재 상호불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질에서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출혈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호텔에서 김■♠이 팬티 사진을 찍어두었다. 위 사건 이후로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 □▷▷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다.

♣♣♣, 증인 송★♠, 김◇♠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피해자와 김■♠ 연명의 고소장 및 의무기록 사본,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의하여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상해가 언급되지 않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성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 진술한 점, ○피해자의 사진 중 허리 부위 타박상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생긴 상처라고 ◇★★,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 ㉿♣♣♣ 태권도 연습과정에서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경찰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일시는 ♥◎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2006. 4. 4. 18:30경부터 21:00경 무렵이라는 것인데,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는 2006. 4. 8.이 피해자의 마지막 생리일이고, 생리기간이 7일로 기재되어 ♥♥ 당시의 질 출혈은 생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 □▷▷과의원에서 치료를 ♣○○○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를 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질내 파열상, 불안신경증 등이 피고인의 강간행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 또는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강간

죄 또는 준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야 공소를 제기할 수 ◇♡, 피해자의 ★◇◇◇에서의 진술과 그 명의의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를 기각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되어야 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되므로, 이에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김♥◇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하고,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치상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간으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범위 내에서 유죄로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강간의 점만을 유죄로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위법하다.

□◇으로, 피해자 김▶◇, 김◆▲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원심과 같이 이를 유죄로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 김♥◆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해자 김■♠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 경합범 관계에 ♥♥, 피고인에 대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 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원심과 같이 공소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판결]

범죄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사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삽입하고, 위 모두사실 다음의 순번 "1.", "2.", "3."을 "2.", "3.", "4."로 고치고, 위 범죄사실 "4.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의 점"을 "5.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으로 고치고, 위 범죄사실 "4.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의 점" 말미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김♥◆(여, 23세)는 대학생이던 2000. 6.경 친구의 소개로 ●★★★★★교

회 교단에 들어가 2001. 7. 4.경 ♣♣♣♣ 과정을 수료하고 세례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변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8. 2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리조트 내 숙소로 피해자를 다른 사람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못하도록 한 채로 불러 그곳에서 1주일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다가 2001. 8. 30. 19:00경 자신과 추종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리조트 내 숙소로 신도인 ♣☆☆, 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위 ♣☆☆ 등 다른 여자 신도 3명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동시에 면담을 진행하던 중 신체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오게 하여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헤드가 제거된 샤워기 호스와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다량의 물을 주입시키고, 이어 피해자를 그곳 방 침대에 눕힌 다음 브래지어를 벗기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침을 바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출국하여 낯선 이국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맹신하는 추종자들에 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김♠♣, 김♣♠, ♥♣♣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1. 김♥♠의 ★♠♠♠에서의 진술, 1. 경찰병원장에 대한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김♣♠ 사실조회서, 의사진료지시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젊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에 걸쳐 저지른 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ㄴ♣♣♣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교적 지도자에 대하여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극심한 정신적·육체♠ 피해를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ㄷ♣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ㄹ♣하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김▶◇, 김◇▲에 대한 각 강간의 주위적 공소사실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준강간죄를 유죄로 ㄹ♣하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치상의 주위적 공소사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상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은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하는 이상, 위 무죄 부분에 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_____
	판사	이상윤	_____
	판사	김용한	_____